

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 건의

- 대한석유협회 -

이 내용은 지난 5월 23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(편집자주)

■ 건의배경

○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-80(2000.5.20)호에 의한 석유사업법시행령증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증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보면,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 수준에는 양자간 수입가격 차이 등에 기인한 가치비율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그 동안 폐 업계는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 및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가 시급하며, 차등화 수준 결정시에는 양자간 가치비율외에 적정한 수준의 관세율 차이를 반영(별첨 1참조)하여 주시길 여러차례 건의드린 바 있음.

■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 필요성

○ 따라서, 지난 해 귀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

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차등화를 추진하였으나, 뉴라운드협상 등으로 관세차등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점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정유산업이 지니는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양자간 수입부과금 차등화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.

또한,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 및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완을 위하여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을 최저 2배에서 최고 11배까지 차등 설정(별첨2 참조)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, 기본적으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원유보다 최소 2배(10%) 이상 유지되어야 함.

○ 이에, 폐업계는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시 원유와 석유제품간 적정한 관세율 차이를 추가 반영하여 별첨3과 같이 양자간 수입부과금 차등화가 이뤄지기를 재차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.

〈별첨 1〉

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 수준

■ 수입부과금 차등화시 고려사항

○ 가치비율 반영 : 원유와 경질석유제품간 수입가격차이 반영

(단위 : \$/B)

	원유	석유제품 회분유	등유	경유	평균
· 99수입가격	16.11	23.59	25.24	23.92	24.56
· 협행부과금 (부과금비율)	1.70 (10.6%)	1.70 (7.2%)	1.70 (6.7%)	1.70 (7.1%)	1.70 (6.9%)
· 원유부과금비율감안시 (협행부과금의 차이)	1.70 (0)	2.50 (0.80)	2.68 (0.98)	2.54 (0.84)	2.60 (0.90)

- 관세율차이 반영 : 원유와 제품간 적정 관세율차이 반영
- 석유제품 관세율은 원유대비 최소2배(10%) 이상 유지 필요
- 원유25\$/B 기준시 차등 5%효과 : 125\$/B

■ 건의사항

○ 적정차등화폭 : 가치비율(0.90\$/B) + 차등관세차이(1.25\$/B)
 $= 2.15$/B <16원/l>$

○ 적정부과금 수준

- 원유(리포메이트 포함) : 1.7\$/B <13원/l>
- 석유제품 : 1.7 + 2.15 = 3.85\$/B <29원/l>

<별첨 2>

주요 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현황

구분	미국	일본	EU	중국	대만
원유	5.25￠/B(API25° 미만) 10.5￠/B(API25° 이상)	무세 (215¥/kl)	무세	8% (1.5%)	2.5%
휘발유	52.5￠/B	1,830¥/kl (1,400¥/kl)	4.7%	14% (9%)	15% (12.5%)
등유	10.5￠/B	1,760¥/kl (570¥/kl)	4.7%	14% (9%)	15% (12.5%)
경유	52.5￠/B	1,640¥/kl (1,270¥/kl)	3.5%	11% (6%)	5%
중유	5.25￠/B(API25° 미만) 10.5￠/B(API25° 이상)	390¥/kl (2,400¥/kl)	3.5%	11% (12%)	15% (12.5%)
납사	10.5￠/B	무세	4.7%	20% (6%)	15% (12.5%)
아스팔트	무세	무세	무세	35% (9%)	N.A.
윤활기유	84￠/B	N.A.	3.7%	20% (12%)	N.A.
윤활유	84￠/B	9.6%	3.7%	17% (9%)	7% (5%)
원유대비 관세비고	2~10배	2.7~11배	3.5~4.7%	4~8배	2~5배

*괄호안은 실행세율임

<별첨 3>

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안) 검토의견

개정(안)	검토의견	사유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. [별표 3]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및 그 부과기준 1.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 • 자동차 휘발유 : 리터당 19원 • 항공휘발유(에비가스 제외) : 리터당 19원 • 제트연료유 : 리터당 19원 • 등유 : 리터당 19원 • 경유 : 리터당 19원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 등) ①----- ----- ----- [별표 3]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및 그 부과기준 1.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 • 자동차 휘발유 : 리터당 29원 • 항공휘발유(에비가스 제외) : 리터당 29원 • 제트연료유 : 리터당 29원 • 등유 : 리터당 29원 • 경유 : 리터당 29원	-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 수준 확대 필요 •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및 국내생산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금 차등화 필요 • 원유와 석유제품간 가치비율 외에 외국의 차등관세 사례 등을 감안, 양자간 차별화 수준 확대